

부산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학과(물리교육학전공)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 내부 규정

제정 2022.03.28.

개정 2023.06.15.

제 1장 학위청구의 자격

제1조(박사학위 청구 자격)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① 국제학술대회 발표 2회이상을 포함하여 총 4회이상의 학술대회 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② 주저자로 2회 이상의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2조(석사학위 청구 자격)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은 아래 조건 중 1개를 만족하여야 한다

- ① 학술대회 발표 1회이상을 하여야 한다.
- ② 주저자로 학술논문투고를 1회이상 하여야 한다.

제3조(학위청구자격 심사)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은 청구논문 심사신청 할 때에 위 학위 청구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논문 심사신청까지 학위청구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과장의 판단에 따라 청구논문 심사완료 시점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제 2장 종합시험 유형 및 과목

제4조(응시자격) 각 과정 수료기준학점의 1/2이상 이수한 후 학과(장)이나 전공주임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제5조(응시과목)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한다.

① 학위과정별 종합시험 과목은 석사과정은 3과목이상, 박사과정은 4과목이상을 응시하여야 한다.

② 응시과목은 전공과목으로 하되, 석·박사 과정별로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으로 응시해야 한다.

제6조(합격기준)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석사과정은 60점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석사과정은 3과목이상, 박사과정은 4과목이상 합격하여야 한다.

제7조(필답시험면제) A0 학점이상 취득한 응시과목의 경우, 학과장에게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면제신청서(서식1)을 제출하여 필답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부칙(2022.03.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06.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서식1)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면제신청서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면제신청서

학과		학번		성명	
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논문 지도교수	

연번	이수년도 / 학기	과목명	담당교수	학점	성적	자격대체
1						유 / 무
2						유 / 무
3						유 / 무
4						유 / 무
5						유 / 무
6						유 / 무
7						유 / 무

붙임 성적증명서 1부.

상기와 같이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 . .

지원자 : (인, 서명)

위 학생은 「부산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학과(물리교육학전공)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 내부 규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물리교육과 학과장 (인)